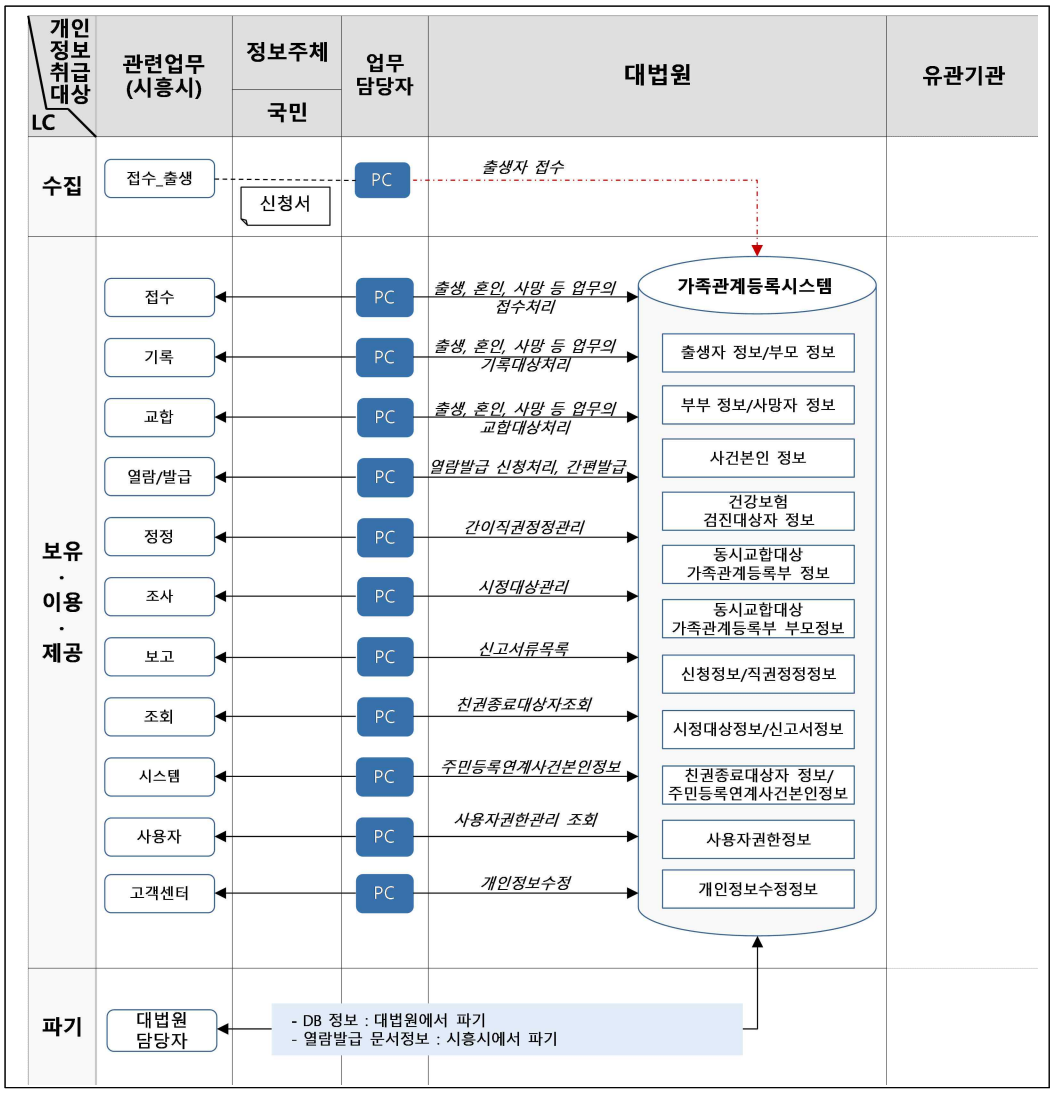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시흥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주)지티시큐</td><td>평가기간</td><td>2026.04.06.
~
2026.06.26</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5개시스템 전체)</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시흥시 「가족관계등록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대법원에서 기 구축</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td></tr>
<tr><td rowspan="3">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5만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td><td>추진예산</td><td colspan="2">-</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시흥시 정보통신과</td><td colspan="3"></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및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td><td>추진유형</td><td colspan="2">□ 신규 구축
□변경(분리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대법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td></tr>
</table>

개인정보파일 개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가족관계등록부 파일	135,612 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없음	개인의 신분관계 공시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열람/증명신청서 파일	642,739 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없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열람 및 교부 신청에 따른 처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업무흐름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시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족관계 DB를 구축 •시흥시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의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 시 열람.발급처리를 하고 있음 •가족관계 DB 정보는 대법원에서 보유/파기하고, 시흥시는 열람.발급 등의 문서를 파기하고 있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표삭제(2026.04 기 수행으로 삭제) – 개인정보보호 조직 : 1.1.1 ~ 1.1.2 – 개인정보보호 계획 : 1.2.1 ~ 1.2.3 –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 1.3.1 ~ 1.3.2 – 정보주체 권리보장 : 1.4.1 ~ 1.4.3 ▪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지표삭제(해당없어 삭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5.1.1 ~ 5.1.6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5.2.1 ~ 5.2.4 – 생체인식정보 : 5.3.1 ~ 5.3.2 – 위치정보 : 5.4.1 ~ 5.4.2 – 가명정보 : 5.5.1 ~ 5.5.9 – 자동화된 결정 : 5.6.1 ~ 5.6.4 – 인공지능(AI) : 5.7.1 ~ 5.7.10
	주요 평가기준	영향평가 수행 시 대상시스템 및 업무에 관련된 법령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행함 ※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및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10.0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제36340호, 2026.05.19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5-9호, 2025.10.31. 시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09.05. 시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및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제3자 제공은 하지 않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평가대상시스템은 대법원에서 기 구축한 시스템으로 평가대상기관은 이용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평가 항목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대상기관에서의 침해요인은 발견되지 않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없음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2026.04.25. 보고서 제출)”에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에 의거 제외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 모두 적절하게 이행(100%)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25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1개 항목을 제외하고 4개 항목 모두 적절하게 이행(100%) 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42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7개 항목을 제외하고 15개 항목 모두 적절하게 이행(100%) 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는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